

		보도설명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3. 19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녹색도시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신보미, 서기관 심인보, 주무관 이정섭 • ☎ (044) 201-3745, 3746 	
	공공택지기획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하태아 • ☎ (044) 201-4505, 4526 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이라도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서울신문, 3.19) >

- ◆ 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
- ◆ 영농 안 하는 불법시설물 수두룩... '이행강제금' 없이 보상금 주나

-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*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**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 제41조의2(이행강제금의 산정·부과)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** 개발제한구역 불법행.위에 대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(연 1회)하여 부과

-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을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*됨에 따라 지구계획 고시가 있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해제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.

* 제22조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적용 특례)
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□ 이러한 **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지역에 대하여도 해제대상지역과 같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회신(2019.10)을 하였고,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(2021.1)*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**

* (제41조의2 제2항제1호)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대상자: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□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규정은 **불법행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유예하는 재량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유예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·관리나 불법시설물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**

○ 또한, 3기 신도시 발표(주민공람) 이후 설치한 불법시설물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, 발표 이전 설치된 불법시설물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 등에서 제한이 됩니다.

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가 아닌 **영리목적 등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, 고발 등 엄중 조치**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신도시 보상과정에서도 불법행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·확인하여 **부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**하겠습니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서기관(☎ 044-201-37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